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최유진, 성지윤, 남기정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1. 접수 제36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C으로부터 C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에 원고의 아들 명의로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9. C을 상대로, 원고가 C에게, 2016. 8. 17. 5,000만 원, 2016. 12. 16. 500만 원, 2016. 12. 20. 200만 원, 2017. 1. 1. 300만 원, 2017. 1. 2. 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7774 가스설치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2. 6. ‘C은 원고에게, D와 연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0. 2.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C은 2017. 3. 24.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4. 1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부터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7.부터 위 모텔에 대한 차임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입금 날짜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알았고,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스설치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9. 8. 29.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알았던 것이 명백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1. 2. 1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5. 17.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E를 상대로 2019. 8. 29.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C이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연락도 안되고 5월부터 월세에 까라고 하던 것 남동생 F과 짜고 조카 B 명의로 건물이 넘어 갔다. 2017. 5. 이후 C은 도망갔고 월 50만 원도 모든 것이 끝났고, 남동생은 누나한테 받으라고 말이 안통한다. 집주인이 명의 변경하리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였다. 돈마저 이렇게 사기당하고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피고에게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될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5. 17. 또는 2019. 8. 29.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실을 알고(원고로서는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C의 재산상태를 알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C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C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6. 8. 17.부터 2017. 1. 2.까지 C에게 합계 6,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후인 2017. 3. 24.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C에게 6,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이는 피고가 가스보일러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라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데, 설령 피고가 가스보일러 비용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C으로부터 가스보일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돈을 빌려달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가 원고가 C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의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G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H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는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외에 추가적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의 동생인 F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C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6, 7호증은 F의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F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것처럼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의 아버지 F은 C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C이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자, F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권 회복을 C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C이 F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F이 본래 자기 소유였던 부동산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2.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J, K으로부터 C(개명전 이름 E) 명의로 2002.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22.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는 점,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상대방은 F이 아니라 피고인 점,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F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C에게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미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7년 이후의 송금일 뿐만 아니라 송금내역만으로는 그

송금액의 성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과 C 사이의 자금지원관계는 물론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관계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F이 C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C의 조카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으므로, C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에 수반된 납세절차 등의 각종 행정업무를 F이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순남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 327㎡

2.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

1층 28.76㎡, 2층 210.89㎡, 3층 210.89㎡, 4층 210.89㎡, 5층 210.89㎡, 6층

182.81㎡, 7층 53.24㎡, 옥탑층 23.30㎡

